



## 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안내

---

### 1. 관련

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(정의) 및 제52조(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)

나.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5064(2022.10.28)

다. 경찰청 교통안전과-3941(2023.7.26.)

라. 경찰청 교통안전과-4502(2023.8.25.)

2.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경찰청 요청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'어린이통학버스'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
3.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위원회(경찰청)으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홍보·계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.

4.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등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시설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준수,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의 정상적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경찰청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관련 협조 요청 1부. 끝.

